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도로교통법」상 벌칙 기준과 예상 피해 정도가 낮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저연차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참작사유로 ‘공무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징계가 중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를 "(징계의결등 요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로,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를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

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

가.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5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결정된 경우에는"을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으로, "경우에 징계의결등"을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

호) 중 "기타의 경우에는"을 "그 밖의 결정 : "으로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제7조(종전의 제5조의4) 중 "영 제9조제3항제2의2호"를 "영 제9조제3항제2호의2"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중 "계급"을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그 밖의 정상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③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감독자 :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 감독자가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

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 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감경)"을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결서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5조(중전의 제11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중전의 제12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인사기록카드 "감찰사항"란"을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 1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중 "비위"를 "비위(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 은 경우	별표 5와 같음
---	----------

별표 1 제7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	-------	-------	-------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제1호카목"을 "제1호타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타목"을 "제1호파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호 라목의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2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 형 별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2)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별표 1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터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의3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 관련)"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10조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	-------------------------	------------------------

별표 4 중 "(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계급)	성명			
	(현재)	(현재)				
	(비위행위 당시)	(비위행위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처	날짜	종류	발령처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행위자의 정상참작 사유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해당함,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 년 월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 ----- ----- ---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 -----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가 제10조의 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않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

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뇌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

가.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3. <u>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 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u> 4. <u>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u> <u>제5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u>	<u>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u> <u>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u> <u>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

제5조(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등 요구) -----

-----.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

2. -----
 --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 경우에

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 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 는 <u>경우에 징계의결등</u> 요구 2.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 정 및 <u>기타의 경우에는</u> 징계 의결등 요구 <u>제5조의3</u> (생략) <u>제5조의4</u>(확인서) 영 제9조제3항 <u>제2의2호</u>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 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 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가. (생략) 나. 혐의 당시 <u>계급</u>, 비위행위 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 향 및 공적 다.·라. (생략) 4. (생략) ② (생략)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는 <u>징계의결등</u> ----- ----- -- 3. ----- -- <u>그 밖의 결정</u> : ----- --- <u>제6조</u> (현행 제5조의3과 같음) <u>제7조</u>(확인서) 영 제9조제3항제2 <u>호의2</u>----- -----.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u>계급</u> 및 공무원 <u>근무경력</u>----- ----- 다.·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등 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
본의 작성

제8조의2 (생략)

-----.

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
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
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
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
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
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
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
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
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
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
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
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9조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신설>

제10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그 밖의 정상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

<신 설>

③ (생 략)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감독자 :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
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
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
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
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 감독자가 제5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
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
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
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행위자(제5조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④ 삭제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0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감경)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10조-----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
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
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
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
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
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
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

제11조(서류 등)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1. ~ 5. (생략) 6. <u>경고 등 처분대장(「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u> 제12조(인사기록 등) ① (생략) ② <u>제9조제2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감찰사항”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u> <u><신설></u>	<u>창을 받은 공적</u> 3. 「<u>모범공무원 규정</u>」에 의해 <u>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u> 4. <u>행위자가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u> 5. <u>감독자가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u> 제15조(서류 등) ----- -----.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6조(인사기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4조제2항</u>----- ----- ----- --- <u>인사기록카드</u>----- -----. 제13조(징계의 가중) ① <u>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u>
---	--

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

<신 설> 제18조 (생 략)	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서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7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 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 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다.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3조(관련 사건의 처리) 동일사건으로 관할이 서로 다른 징계위원회에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요구할 때에는 먼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된 자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

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

가.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제5조(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

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징계의결등 요구

제6조(우선심사 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확인서) 영 제9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등 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가. 징계등 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등 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
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9조(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
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
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10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
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누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그 밖의 정상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
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감독자 :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⑤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

- 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

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 감독자가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 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서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5조(서류 등)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1. 징계등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서식)
2.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서식)
3. 징계위원회의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
4. 징계의결등에 관한 서류철
5. 징계위원회 청인(廳印)과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의 청인과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

6. 삭제

제16조(인사기록 등) ①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② 제14조제2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 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17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 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비위(자 목에 따른 비위 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부작위· 직무태 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 한다)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적극행정 운 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극 행정 마. 「국가공무원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 른 부정청탁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 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7조의2제 11항에 따른 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과상여금을 거짓 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 은 경우 차.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의 3에 따른 부당한 행위 가. 성 관련 비위 나 「공무원 행 동강령」 제13조 의3에 따른 부당 한 행위에 대응				
				별표 5와 같음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지 않거나 은 폐한 행위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 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 직무상 비밀 또 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 조에 따른 내부 결속 저해행위 거.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정직-감봉 견책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 행으로 업무추진 에 중대한 차질 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 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 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나. 성 관련 비위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별표 1의3과 같음			
라. 마약류 관련 비위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				

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 나목을 적용한다.

3. 제1호 **과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 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제7호 **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의 직원

-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
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
원을 말한다)

5. 제7호 라목의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2)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의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 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다. 공연(公然)음란행 위 라. 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행위 마. 카메라 등을 이용 한 촬영 등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2. 성희롱 가. 반복·상습적이거 나 피해자가 다수 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희롱 나. 가목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3. 성매매 가. 미성년자 또는 장 애인 대상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 가목 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2호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6. 제3호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3 1	2 2	1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비고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징계양정 감경기준(제12조 관련)

구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1	파면	해임
2	해임	강등
3	강등	정직
4	정직	감봉
5	감봉	견책
6	견책	불문(경고)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3.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횡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계급)	성명			
	(현재) (비위행위 당시)	(현재) (비위행위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정상참작 사유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 년 월					
	퇴직 예정일					
정년: . . 계급정년: . . 근무기간 만료: . . 그 밖의 사항():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

직인